

직원인사규정

	규정번호	3-3-16
	제정일자	1997.03.01.
	개정일자	2020.06.01.
	개정차수	11차
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직원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새빛학원 정관 직제 제93조에서 정하는 일반직, 기술직에게 적용한다. 제3조(직종 및 직급) ① 직종은 일반직, 기술직으로 한다.

- ② 직급은 일반직은 9급부터 4급까지로 하며, 기술직은 9급으로 한다.
- 제4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 - ② 직원은 그 정년의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.
- 제5조(신분보장) ①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, 형사피소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, 감봉, 휴직, 기타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위 1항을 제외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84조에 의한다.

제2장 임 용

- 제6조(신규임용) ① 일반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 - ②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,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, 적성 또는 교육 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한다.
- 제7조(임용 절차)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서 행한다. 다만, 면직, 휴직, 전보, 승진의 경우에는 발령통지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의 신규 채용시에는 [별표1]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임용시기) 직원은 임용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- 제9조(정원) ① 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의거 책정한다.
 - ② 비정규직원은 직원정원에 관계없이 실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, 1개월 전에 해당직원에게 해임 통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비정규 직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임용기준) 직원은 기독교인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에 따른 능력, 기술 및 자질 등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형하고, 근무 실적 등을 참작하여 직급 및 호봉을 산정한다.
- 제1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-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 - 2.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제12조(신규임용자의 기본직급 및 호봉) 직원의 신규임용시 기본직급과 호봉은 다음과 같다.

학력구분	대학졸업	전문대학졸업	고등학교 졸업
일반직·기술직	9급 4호봉	9급 3호봉	9급 1호봉

- 제13조(승진) ① 승진은 직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, 직무연수, 직무능력, 학교에 대한 기여도, 근무상황 등에 의한다.
 - ② 승진에 필요한 근무년수는 승진되는 하위 직급에서 7급까지는 3년, 7급 이상은 4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.
- 제14조(승급) ① 직원의 승급은 1년에 1호봉씩 승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, 그 시기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외한다.
 -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급될 수 없다.
- 제15조(승진제청) 직원의 승진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.
- 제16조(보직) ① 보직이라 함은 직에 보함을 말하며, 이의 임면은 총장이 이를 행한다.
 - ② 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적으로 하며,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또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전보)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보 수

- 제18조(보수결정원칙) ①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하며 일반 표준생계 비, 민간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 간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 - ②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, 임금 감액률 및 적용시기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9조(보수지급일자)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보수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제20조(상여금) 정식으로 임명된 직원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.
- 제21조(수습기간)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봉급(본봉, 직급보조비)은 80%를 지급한다.

제4장 표 창

- 제22조(표창구분) ① 표창은 공로상과 장기근속표창으로 구분한다.
- ②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하며,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23조(표창사유) 직원 표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.
 - 1. 학교발전에 뚜렷한 업적이 있을 때
 - 2. 재해,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
 - 3.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
- 제24조(표창의 결정 및 실시방법) ① 표창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.
 - ② 표창은 이사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25조(표창 수여자의 특전) 표창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.
 - 1.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

- 2.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 지급
- 3. 특별휴가
- 4.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
- 제26조(장기근속표창) ① 장기근속표창은 10년, 20년, 30년이상 근속한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.
 - ② 근속기간 산출은 법인 임용일을 기준으로 임용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3월 1일까지로 한다.
 - ③ 수상자에게는 특별상여금과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.

제27조(공로상) 공로상은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.

제5장 징 계

제28조(징계의 사유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한다.

- 1. 법령, 정관,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2.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재산에 손상을 끼쳤을 때
- 3.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제29조(면직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
 - 2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
 -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는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30조(변상책임) 직원이 고의,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지며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1조(기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 행 일) 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통 칙)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법에 정한 바를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츠

이 규정은 2002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조

이 규정은 2008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츠

이 규정은 2009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12조, 제14조, 제18조,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 월 29일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츠

이 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